

#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(낙원상가) 조성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2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(센터 설치·운영 등)에 의거 '19.7월 조성 예정되어있는 「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(낙원상가)」 운영 관련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국내최대 악기 종합상가인 낙원상가의 공용공간을 개선하여 음악(밴드, 클래식) 중심의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조성·운영하여 시민생활문화 활성화
- 기존 생활문화시설(대관, 연습공간)뿐 아니라 생활문화지원센터의 기능 강화
  - 1층 악기공유 및 수리센터, 시민예술창작캠프 등을 통해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

### 나. 위탁대상 현황

시설명	위 치	시설규모	운영인력	위탁기간
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 (낙원상가)	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(낙원상가 내 하부공간 및 옥상공원)	679㎡ (협의 중)	6명	2019.8월 ~ 2022.7월 (3년)

다. 모집방식 : 공개경쟁입찰

라. 위탁대상 사무

- 뫼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(1층 생활문화큐브 및 낙원상가 임대공간)
- 뫼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 공연·교육 등 다양한 시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
마. 위탁운영비 : 702백만원

- 민간위탁금(인건비, 사업운영비, 일반운영비) : 352백만원
- 민간위탁사업비(악기 등 물품구입비) : 350백만원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 참조

- ①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(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)
- ②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(센터 설치·운영 등)
- ③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나. 예산조치 : 702백만원('19년 예산 편성) 필요

다. 합 의 : 조직담당관 및 예산담당관 합의 완료

-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 : 결과(적정) - '18.9.21.
- '19년 예산 조정 완료 : 702백만원 - '18.10.1.

※ 작성자 : 문화정책과 시민문화팀 이주현 (☎ 2133-2543)

**[지역문화진흥법]****제8조(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)**

1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2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.
4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5.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**[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]**

제8조(센터 설치·운영 등) ②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**[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]**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3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